

저는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력자로 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1. 수강동기

처음에는 독학으로 공부를 시작하였으나 계획대로 학습 진도가 나가지 않자 학원 강의 계획에 따라 주어진 학습 진도를 지키기 위해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수험교재도 모두 학원교재로 바꾸었습니다.

2. 합격원인

(1) 주어진 수험환경에 맞는 공부계획 세우기

무리한 공부계획은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 수험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결국 불합격의 원인이 됩니다.

저는 독학을 하면서 시간적인 한계(직장생활), 체력적인 한계(나이)와 인지력, 기억력의 감퇴 등을 절실히 느끼고 학원 강의를 수강할 것을 결심하면서 나오지 않을 부분은 처음부터 보지 않고 나올 부분만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을 예로 들면, 학원에서 제공하는 사례문제를 반복적으로 보기로 계획하고 교재와 강의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여 학습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니 강의가 이해되지 않아도, 강의를 듣지 못하게 되더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2)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 과감하게 공부계획을 수정하기(=낙담하거나 기존 공부계획을 고수하지 않기)

공부는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경우 각성하여 계획에 따른 진도를 만회할 수도 있겠지만 낙담하여 자괴감에 빠지거나 기존의 공부계획을 무리하게 고수한다면 시험에 불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일부 과목의 경우 3순환 자료의 모의고사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3) 업무에 충실하기(법원직의 경우)

부동산등기법에서 출제된 쟁점인 형성판결인 공유물분할판결과 달리 공유물분할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분할내용에 따른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민사재판업무를 담당할 때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으며,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에서 출제된 쟁점인 채권양도통지와 전부명령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 누구에게 변제하더라도 유효한 변제가 된다는 내용은 공탁업무를 할 때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3. 과목별 공부방법

과목별 공부방법은 다른 합격수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는 암기가 힘들어 공부할 때 항상 어떠한 상황(사안)인지, 여기서 무엇이 문제(쟁점)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법에서 관할의 특례(관련 신청사건) 문제의 경우 사안(공유물분할협약에 따른 등기신청)을 보자 바로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가 서로 다르게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당사자 동일성 불인정).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보다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을, 부동산등기법보다 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을 먼저 공부하시는 것이 나중에 민사소송법과 부동산등기법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마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순환에 충실하지 못하였더라도 2순환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2순환에 충실하지 못하였더라도 3순환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추신: 악필임에도 인내하며 채점하여 주신 채점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